
대전형 코업(co-op) 「청년 뉴리더 양성」 사업 시행 지침

2019. 1. 2.



목 차

I. 총칙	1
① 목적	1
② 용어의 정의	1
③ 운영주체별 역할과 임무	2
④ 사업추진체계	4
⑤ 사업추진 흐름도	5
II. 운영기관 신청서 접수 및 심사	6
① 운영기관의 신청서 접수	6
② 사업신청 및 접수처리	6
③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	6
④ 운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	7
III. 자격요건 및 운영관리	8
① 대학생	8
①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자	8
②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체험기관	8
③ 참여자 모집	9
④ 참여자 선발·매칭 및 직무협약체결	10
⑤ 청년 뉴리더 양성 운영관리	11
② 청년인턴	13
①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자	13
②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체험기관	14
③ 참여자 모집	14
④ 참여자 선발·매칭 및 직무협약체결	15
⑤ 청년 뉴리더 양성 운영관리	15

목 차

IV. 지원금 지원	16
① 대학생	16
① 지원기준 및 관리	16
②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	17
③ 지원금 반환 및 정산	18
② 청년인턴	20
① 지원기준 및 관리	20
②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	20
③ 지원금 반환 및 정산	21
V. 사업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	22
① 사업결과보고	22
② 지도점검 및 지원기관 운영	23
③ 사후관리	24
④ 사업평가	25
VI. 행정사항	25

대전형 코업(co-op) 「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」 시행 지침

I 총 칙

1 목 적

- 지역 미취업 청년 및 대학 재학생의 기업 직무체험 및 일 경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기 취업 활성화 도모

※ 추진근거

-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4조(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) 및 제25조(청년·여성·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)
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8조의2(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)

2 용어 정의

-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(이하 “뉴리더 양성”)은 미취업청년 및 대학생에게 인턴이나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
-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 대학생(이하 “학생”)은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 재학생을 말함
-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청년 인턴(이하 “인턴”)은 대전시 거주,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참여기업과 「근로계약서」를 체결하고 현장실무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함
-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 체험기관(이하

“기업”)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및 학생을 선발하여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대전지역 소재민간기업,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, 비영리단체 등을 말함

-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기관(이하 “운영기관”)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, 대전광역시로부터 청년 뉴리더 양성과정 사업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2~3년제 및 4년제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(이하 “대학”) 등을 말함
- 직무연수지원금(이하 “연수지원금”)은 뉴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통비, 식비, 교육비, 훈련비 등 명목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
- 인턴지원금은 뉴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인턴에게 지원하는 임금을 말함
-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 수행기관(이하 “수행기관”)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가 지정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말함

3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

운영지원(대전경제통상진흥원)	프로그램 운영(기업)	프로그램 운영총괄(대학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비 배분 및 현장실사 및 관리감독 ▶ 일자리 포털 구축 운영 ▶ 운영(각 대학,기업)기관 평가관리 등 ▶ 전담 매니저 운영 ▶ 미취업 청년 인턴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무체험 전담자 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 내 담당자 지정 - 학습프로그램 지정 - 학생 면담, 출결관리 등 ▶ 학습프로그램 수립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험목적 및 분야 등 적시 - 동기부여와 직업의식 고취 등 <p>*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대전시 일자리 포털 시스템 사용 의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 매니저 운영 ▶ 담당 지도교수 지정·운영 ▶ 학생 및 기업 예산지원 <사전직무교육 등> ▶ 직장생활관련 프로그램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로탐색, 취업준비 - 직업현실, 직장매너 및 문화 등에 대한 이해 - 분기마다 참여자 소통의 장 마련 <사후관리> ▶ 학점인정 및 부여 ▶ 직무체험 만족도 조사 <p>*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대전시 일자리 포털 시스템 사용 의무</p>

가. 대전광역시

- 대전광역시는 사업 시행계획 수립, 시행지침 제·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
-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
 -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안내
 - 운영기관 및 체험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 - 운영기관 및 체험기관 지정, 운영약정 체결
 -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(취소·반환 등)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·점검
 - 대전시 일자리 포털 시스템 총괄 관리

나.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기관(대학)

-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운영약정을 체결, 필요한 전반적 업무 수행
 - 학생 모집 및 기업 발굴·매칭, 사전교육, 실적관리, 전담 매니저 운영 등
 - 분기별 1회 이상 참여자 소통의 장 마련
 - ※ 참여자는 참여 기간 중에 필히 1회 이상 소통의 장 참여하여야 함
 - 기업의 뉴리더과정 운영상황 확인·지도 및 진흥원에 대한 실시결과 및 성과 등 보고, 사업비 청구, 기업 및 학생에 대한 경비 지원
 - 학과·교수들의 참여 유도 및 청년친화강소기업·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및 기업 발굴
 - 대전시 일자리 포털 시스템을 통한 업무 관리

다.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체험기관(기업 등)

- 시행지침, 운영기관과의 약정, 학생과의 협약의 범위 내에서 학생

들에 대한 사전교육, 특별과제 부여 등 실효성 있는 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

- 대전시 일자리 포털 시스템을 통한 업무 관리

● 고용노동부의 「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」('16.2.1.)에 따른 참여 학생 보호 및 관리(붙임)

- 직무체험자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

4 사업추진체계

<p>대전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합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• 직무체험 사업의 전반적 관리·감독 및 행정적 지원
<p>대전경제 통상진흥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, 직무체험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사후 관리 • 미취업 청년 인턴 모집·선발 • 직무체험 참여 기업 수요조사 / 대전시 소재 기업(대학과 공동) • 대학 및 기업수요인력 매칭 지원, 사업비교부(기업체) 등 소요예산 파악 등 관련 전반에 관한사항 • 운영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• 대전일자리포털을 통한 업무 추진
<p>대 학 (운영기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무체험 참여 학생 모집·선발 / 공개모집을 통한 학과장 추천 • 담당지도교수 지정·운영, 학점인정 및 관리 • 사전 직무교육, 직무체험협약 체결 / 참여대상 • 연수지원금 등 사업비 신청, 직무체험 연수지원금 등 지급 및 정산 • 성과 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 • 대전일자리포털을 통한 업무 추진
<p>참여 기업 (체험기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무체험 학생 및 청년인턴 채용 / 서류(지원서, 자기소개서) 및 면접심사(기관 자율) • 직무체험 협약(학생-기업) 및 청년인턴 근로 체결(기업-청년) • 직무체험 및 청년인턴 복무관리 / 출근부 확인 및 승인관리 • 직무체험 및 청년인턴 근로여부 최종확인 • 대전일자리포털을 통한 업무 추진
<p>유관기관 (중소벤처 기업청, 대전지방 노동청, 대전테크노 파크 등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우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, 미래 신성장 기업 등 발굴, 데이터 관리, 인력 배치 시 협조지원 • 기업수요조사 방법 노하우 등 공유 • 기업인력 수요조사 시 기업체 선정 협조 등

5 사업추진 흐름도



II 운영기관 신청서 접수 및 심사(대학생 직무체험)

1 운영기관의 신청서 접수

1-1. 사업공고, 안내공문 및 홍보

- 「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」 구체적 내용 공고 및 홍보 (진흥원)
- 운영기관 모집은 정기, 수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함(목표인원 고려)
- 수탁요건을 갖춘 대학 등에 대해 설명회 또는 간담회 형태로 설명 및 홍보

1-2. 운영기관의 신청자격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대학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

2 사업신청 및 접수 처리

2-1.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

-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서류 제출
 - 운영 제안서(서식①), 기관현황 및 추진실적(서식②), 계획서(서식③)

2-2. 접수처리

- 운영기관이 제출한 서류 일체에 대해 신청서식 누락 여부 확인 및 보완 요청, 접수 서류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, 심사위원회 제출

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3-1.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심사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

3-2. 심사기준

- (사업수행능력)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, 해당사업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
- (사업계획의 적정성) 사업계획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참여기업 또는 참여자 모집 방안,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등 심사

3-3. 심사기준의 변경

- 사업자 선정기준은 사업수행능력,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하되,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·시행 가능
 - ※ 운영기관 심사기준(서식④)
 - ※ 운영기관 심사표(서식⑤)
 - ※ 운영기관 선정 심사결과 서식(서식⑥)

4 운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

4-1. 운영기관 선정 및 통지

- 최종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
- 전체 신청인원이 '19년 목표인원을 초과(예산 범위)하는 경우에는 대학별 인원조정 가능

4-2. 위탁약정 체결 및 변경 등

- 선정된 대학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간에 보안서약서(서식⑧)를 첨부하여 사업개시일 이전에 운영약정(서식⑦) 체결
- 운영기관은 「대전광역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지원 약정서, 시행지

침을 준수

- (약정변경 승인) 대학이 약정내용 중 아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신고서(서식⑨)를 관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
 - ① 목표인원 증감을 수반하는 예산내역 변경(직무연수지원금↔관리자지원금), ② 목표인원 변경 등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중요사항
- (약정변경 신고) 위 승인사항 외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변경신고서(서식⑨)를 제출
 - 학생의 체험시간일자 변경, 목표인원 증감이 없고 예산내역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① 학생의 체험기간 조정, ② 체험직종 및 내용, ③ 사전직무 교육프로그램 내용변경(교육시간은 준수) 등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(단, 지침범위 내에서 가능)

4-3. 위탁약정 체결 시 고려사항

구 분	내 용
산재보험	- 체험기관(기업)에서 개별 의무가입
계약보증금	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 불필요

Ⅲ 자격 요건 및 운영관리(대학생, 청년인턴)

1 대학생

①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디 양성 참여자

1-1. 참여대상

- 학생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, 제2호, 제4호에 따른 ‘대학’에 재학 중 2~4학년 재학생 위주로 하되 졸업유예자, 휴학생도 가능
단,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이중 참여 할 수 없음

1-2. 제외대상

-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
 - ※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된 현장실습
-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 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
 - ※ 유치원·초등·중등·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 관련 학과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- ※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체류 자격자는 가능

② 대전형 코업(co-op) 「청년 뉴리더 양성」 체험기관

(기업 등)

2-1. 참여대상

- 지역 내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,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,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(대기업 포함), 공공기관(사전협의를 된 타 지역 공공기관은 참여 가능, 자치단체는 제외), 교육기관, 사회·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
 - ※ 교육기관: 국·공·사립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(교직원수 5인 이상), 대학 등
 - ※ 지방자치단체는 시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
- 단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
 - ※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(www.venturein.or.kr)에서 확인 가능

2-2. 제외기관

- 소비·향락업체*,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**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***)
 - * 소비·향락업체는 「청소년보호법」, 「공중위생관리법」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이 정하는 업종(노래연습장업, 단란 주점, 비디오물감상실업, 이용업, 무도장업, 사행행위영업, 대여업

등)

** 학생이 해당 과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뉴리더과정으로 하는 것은 가능

*** 소속 학생을 다른 사업장에 뉴리더과정 시킬 수 없음

●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

※ (예)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

●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다단계판매업체, 보험 회사 (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) 등

●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
③ 참여자 모집

3-1. 학생

●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운영기관인 대학의 모집 시기에 맞춰 담당부서에 신청

- 일자리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참여 신청

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의무 제출(서식⑭-1)

- 직무체험 참여시 학습일지(서식⑮)를 매일 일자리포털시스템에 작성 등록

3-2. 기업

●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일자리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대학에 신청

- (신청내용)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참여 신청서 (서식 ⑯) 참고

※ 운영기관과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현장실습 협약 등을 체결한 기관(기업)은 당해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

④ 참여자 선발·매칭 및 직무협약 체결

4-1. 참여자(학생) 선발

- 운영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되, 학년·전공·성적·생활수준 및 직장경험 유무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참여 대상자를 선발·추천
- 기업은 참여 학생을 추천받기 전에 선발을 원하는 전공, 학년, 체험기간 등을 포함한 선발조건을 운영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, 운영기관은 가급적 이를 근거로 학생을 추천
- 운영기관은 참여희망 학생에게 직업심리검사 등을 포함한 진로 상담을 실시하고, 가급적 청년 및 학생의 희망·적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 추천

4-2. 참여자(학생)와 기업 간 매칭

- 기업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 중 뉴리더과정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발
 - 당해 기업의 업무특성이나 체험직종, 추천 받은 학생의 전공과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

4-3.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(학생↔기업)

- 학생과 기업은 자율적 협의를 거쳐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(서식⑱)을 체결하고,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

※ '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'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로이 체결 가능한 「민법」 상 무명 계약의 한 형태로 근로계약과는 구분됨. 단 청년 인턴참여자는 예외

-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서에는 연수기간·장소·시간·지원금·약정·약정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동 시행지침의

범위 내에서 기업과 학생이 합의한 경우 청년 뉴리더 양성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
- 참여 기업은 채용을 목적으로 청년인턴 및 학생선발

⑤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운영관리

5-1. 참여 학생의 법적 지위

- 「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('16.2.1)」(붙임㉔)에 따라, 참여 학생은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아닌 “일 경험 수련생”으로서의 지위를 가짐
- 직무체험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체험기관(기업)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
- 다만, 기업은 대전형 코업(co-op)청년 뉴리더 양성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 이상의 직무연수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함

5-2.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기간 및 시간

- (체험기간) 청년 뉴리더 양성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함
 -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중 재해발생으로 요양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, 학생·기업 간 협약을 변경하여 그 기간만큼 체험기간 연장가능
 - 체험 기간은 2개월 이상의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12주 이상 참여 권장, 학생 및 기업,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달리

정할 수 있음

- (체험시간) 연수시간은 1일 4~8시간(주 40시간 이내)의 범위로 함

- 기업의 근로조건 등에 따라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(주 40시간) 이내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,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함

- ※ 체험시간은 시간 단위로 정하며, 야간(22:00부터 다음 날 06:00까지)에는 체험 불가

- ※ 학생과의 협약서에서 정한 체험시간 외의 시간 및 휴일에 시킬 수 없으며, 특히 여학생에 대해서는 유해·위험한 내용의 뉴리더 과정을 시킬 수 없음

- (체험장소) 학생과의 협약서에 정하는 기업의 사업현장(생산 시설 또는 업무장소) 또는 연수시설(교육시설)로 함

5-3. 사전직무교육(대학)

- (시간) 운영기관은 참여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8시간 이상의 사전 직무교육을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시작 전에 실시해야 함

- ※ 교육은 5일 이내 분할하여 진행 가능하며, 집체·사이버교육 병행 가능

- 대학 또는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집체 및 사이버교육만 인정

- (내용) 사전직무교육은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, 직장생활 예의 등을 중심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

- 직업의 현실, 직업과 삶, 프레젠테이션 기법, 면접특강, 자기주장 훈련, 이미지 메이킹, 개인컨설팅, 발표력 실습, 직장 내 인간관계 등 학생들이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

- ※ 운영기관이 필요한 경우 사전직무교육에 노동관계법령 관련 내용, 일 경

협 수련생 대상 권리구제 방법 등 포함

- (유의사항) 대학은 사전직무교육 실시 대장(서식⑳) 작성·비치
- (지도점검)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필요한 경우, 대학 등이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직접 참관하여 교육내용 등을 확인·지도할 수 있으며, 대학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
5-4. 우수사례 발굴(대학)

- 운영기관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기업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동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우수사례 발굴·제출(반기별 1건 이상 의무 제출)
 - 우수사례 발굴 선정기준 및 절차, 작성서식(별도서식 없음)

5-5. 학습프로그램 수립 등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실시(기업)

- (전담자 지정) 기업은 인사교육 등 담당자를 “전담자” 로 지정,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야 함
 - 전담자는 학습프로그램을 수립하고,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 체험을 운영하며, 학생 면담·관리 및 출결 관리를 해야 함
- (학습프로그램 수립·운영) 기업은 학생의 체계적 연수를 위해 “학습프로그램” 을 수립하고,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실시 전에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(서식㉑)를 일자리포털시스템을 통한 대학 제출
 -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에는 연수의 목적, 일정별 체험분야, 시간장소, 과제 및 업무내용 등 연수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함
 - 단순 업무보조가 아닌 동기부여와 직업의식 고취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과제와 임무를 부여하고, 계획서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여야 함
 -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는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학

생 등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- (중도해지 등) 기업은 무단결석·지각 등 학생이 불성실하게 뉴리더 과정을 수행하거나, 기업의 휴·폐업 등 체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실시 중인 학생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

- 연속 5일 또는 총 10일 이상 무단결석 시 협약해지 가능
- 연수기간 중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당연 협약해지

※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
출석 및 협약해지 내용은 일자리포털시스템을 통한 협약해지

- 협약해지 등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, 기업은 7일 이내에 해당

대학에 중도해지 통보서(서식㉓)를 일자리포털 제출해야 함

2 청년 인턴

1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참여자

1-1. 참여대상

- 청년 : 대전시 거주(주민등록상)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

*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대전시로 등재되어있어야 함.

1-2. 제외대상

-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
- 인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는 자
- 가족회사에 취업한 자
- 다른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※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체류 자격자는 가능

② 대전형 코업(co-op) 「청년 뉴리더 양성」 체험기관

(기업 등)

2-1. 참여대상

- 대전소재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,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·중견 기업,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(대기업 포함), 공공기관(지방자치단체 제외), 교육기관, 사회·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

※ 교육기관: 국·공·사립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(교직원수 5인 이상), 대학 등

※ 지방자치단체는 시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

- 단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

※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(www.venturein.or.kr)에서 확인 가능

2-2. 제외기관

- 소비·향락업체*, 해당 사업장에서 인턴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**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***)

* 소비·향락업체는 「청소년보호법」, 「공중위생관리법」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이 정하는 업종(노래연습장 업, 단란주점, 비디오물감상실업, 이용업, 무도장업, 사행행위영업, 대여업 등)

** 근로자가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인턴 근무하는 것은 가능

***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파견시킬 수 없음. 파견용역으로 채용 시 참여 불가
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

※ (예)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

-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다단계판매업체, 보험 회사(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) 등

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
③ 참여자 모집

3-1. 청년

-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일자리 포털 시스템을 통한 신청
 - (신청서류) 신청서(서식⑳), 주민등록초본, 구직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(서식㉑)
 - 인턴 참여시 출근 확인부 작성하여 기업 담당자에게 확인

3-2. 기업

-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신청서류 작성,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 시스템 직접 신청
 - (신청서류)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(대전소재 및 업종확인),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

④ 참여자 선발·매칭 및 직무협약 체결

4-1. 참여자(청년) 선발

- 일자리포털을 통해 신청 후 본 센터에 내방(신분증 및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초본 지참)하여 구직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선발(고용보험 및 정부지원 수레 확인)

4-2. 참여자(청년)와 기업 간 매칭

- 신청기업과 참여자의 면접을 통한 매칭

4-3.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(청년↔기업)

- 근로계약서로 갈음

4-4. 청년 뉴리더 양성 협약(진흥원↔기업)

- 약정서 작성(서식㉒)

⑤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운영관리

- (지도점검)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필요한 경우, 기업의 회계서류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기업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- (중도해지 등) 기업은 청년 인턴과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사업에 대해 종결하며, 일자리 포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함
 - 협약해지 등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, 기업은 7일 이내에 해당 대학에 중도해지 통보서(서식③5)를 일자리포털로 제출해야 함

IV 지원금 지원(대학생, 청년인턴)

1 대학생

① 지원기준 및 관리

- (대학) 대전시는 대학에 “학생 1인당 월(4주) 2만원 이내”의 운영기관 지원금 지원
 - ※ 운영기관 지원금은 주 단위로 계산
 - 보증보험료, 송금수수료, 분기별 참여자(학생) 워크숍 진행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로 사용
 - 대전시는 운영기관(대학)에 “학생 1인당 시간당 단가 9,500원”의 지원금 지원
 - ※ 시간당 단가를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지급, 30분미만은 불 지급
 - 전담 매니저 채용 및 운영시에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
 - ※ 인건비 지급 기준 및 단가는 행정안전부 인건비 지원기준 또는 협의하여 정한다.
 - 전담 매니저 채용 시 근로계약서 증빙 및 4대보험 가입 필수
 - 전담 매니저는 업무 일지 작성 必 (서식-29)

- 사전 직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시 강사료, 교재비 등 사전 직무교육비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사용
- (기업) 대전시는 기업에 “기업지원금(전담담당수당) 기업별 월 10만원” 을 지원 할 수 있다.
 - ※ 기업지원금은 주 단위로 계산하되, 주 3일 이상, 일 4시간 이상 참여했을 시만 지급
- (학생) 학생에 대한 “직무연수지원금” 은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내용 및 최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전시 지원금 외 추가로 기업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,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
- 직무연수지원금은 교통비·중식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‘임금’ 과는 성격을 달리함
- 기업은 학생들의 출결상황 관리를 위해 일자리 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석을 확인하여야 함

②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

④ 지원금 지급 개요

대학을 통해 일괄 신청 및 지급

- (대학) 대학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지원금 지급신청
→ 진흥원에서 대학에 지원금 지급
- (기업) 출·퇴근 관리 및 출근부 대학에 제출, 지원금 계산 등
- (학생) 대학은 학생들에게 직무연수지원금 일괄지급

- (대학) 대학은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약정 후 신청을 통한 교부,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지급 신청 및 사업 종료 후 정산서 제출(서식⑬-1)

- 대학은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전광역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
-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
- ※ 사업계획서, 회계 서류, 출석부 등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- 대학마다 뉴리더과정 개시일이 달라 지원금 지급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월 중 특정일(예: 10일, 25일)을 정기지급일로 협의·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
- (기업) 체험기관은 매 직무체험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신청서(서식㉓) 및 출석부(서식㉔) 확인, 일자리포털시스템을 통한 확인 후 지급 신청
- (학생) 대학은 뉴리더과정 개시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생에게 “직무연수지원금”을 지급해야 함
- 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대학이 직접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
- 직무연수지원금은 학생 명의의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가능
- ※ 현금지급 시에는 해당 학생이 서명·날인한 수령증(또는 확인서)을 반드시 징구

③ 지원금 반환 및 정산

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규정」

- (제40조)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
- (제41조)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, 200만 원 이하 벌금

3-1. 지원금 반환

- (대학) 대학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 지급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진흥원에 반환해야 함(해당 지원금에 대한 이자 포함)
 - 대학이 선발한 학생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연수생 선발로 인해 받은 지원금의 전부
 - 대학이 사업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·폐지하거나,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, 그 시점을 기준으로 미사용 지원금
 - ※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사업 내용에 의해 지원금을 사용 가능
 -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사용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
 -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
- (기업) 기업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기관(대학)에 반환해야 함
 - ※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사업 내용에 의해 지원금을 사용 가능
 -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
 - 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,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

3-2. 지원금 반환절차 및 조사

- (자진납부) 대학은 반환대상 기업에 대해 반환결정을 통지(반환 사유, 반환금액, 대상자 등 포함)하고,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

- 기한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진행
- (의견청취)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해당 대학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에 따라 당해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청취
 - 다만, 환수대상이 대학인 경우 당해 대학으로부터 의견청취
- (반환명령)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대학에 대해 반환사유,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을 통지(납부기한 14일 이내)
 - ※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분납 가능
- (형사고발) 기업 및 대학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, 반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강제징수 외 형사고발 등도 고려
- (실태조사)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기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 - 실태조사 시,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점검 가능
 - 대학 또는 기업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중단 가능

3-3. 지원금 정산

- 대학은 사업종료일 또는 요구일 로부터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원금에 대해 정산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토대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 환수
 - 대학이 작성·제출한 사업정산보고서(서식⑬-1)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사업결과에 대해 정산 실시
 - ※ 학생에게 실 지급한 금액 확인 →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 확인

- 대학은 중도해지 등에 따른 지원 금액을 정확하게 정산하여야 하며, 기업 및 학생은 과지급금 반환
- 운영기관(대학)은 진흥원이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사업종료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

2 청년 인턴

1 지원기준 및 관리

- (기업) 진흥원은 기업에 인턴 1인당 총 300만원(3~5개월 이내) 지원
 - 기업은 청년 인턴에 대하여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,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.
 - 단, 다른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 불가
- 기업은 매월 청년 인턴의 출결상황 관리를 위해 일자리 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석을 확인(서식36)하여야 함

2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

① 지원금 지급 개요

- (기업) 기업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지원금 지급신청
→ 진흥원에서 기업에 지원금 지급
- (기업) 출·퇴근 관리 및 출근부,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
- (기업) 청년 인턴 인건비에 보조금을 포함하여 급여 지급

- (기업) 기업은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인턴 지원금을

임금 지급 후 7일 이내 신청

- 임금대장, 이체확인증, 인턴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, 근로계약서 첨부
- 기업은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전광역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
-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

③ 지원금 반환 및 정산

㉠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규정」

- (제40조)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
- (제41조)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, 200만 원 이하 벌금

3-1. 지원금 반환

- (기업) 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 지급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진흥원에 반환해야 함(해당 지원금에 대한 이자 포함)
 - 기업이 선발한 청년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연수생 선발로 인해 받은 지원금의 전부
 - 기업이 사업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·폐지하거나,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, 그 시점을 기준으로 미사용 지원금
- ※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사업 내용에 의해 지원금을 사용 가능

-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사용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
-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
- 타 정부사업과 이중지원 수혜시 지원금의 전부 반환

3-2. 지원금 반환절차 및 조사

- (자진납부) 기업은 반환대상 기업에 대해 반환결정을 통지(반환 사유, 반환금액, 대상자 등 포함)하고,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
 - 기한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진행
- (의견청취)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해당 대학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
 - 다만, 환수대상이 대학인 경우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청취
- (반환명령)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대학에 대해 반환사유,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을 통지(납부기한 14일 이내)
 - ※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분납 가능
- (형사고발) 기업 및 대학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금액, 반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강제징수 외 형사고발 등도 고려
- (실태조사)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기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 - 실태조사 시,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

시점점 가능

- 대학 또는 기업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중단 가능

V 사업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

① 사업결과 보고

1-1. 보고서 제출(학생)

- 학생은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과정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(소감문 형식/일자리포털시스템을 통한 등록)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

1-2.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과정 실적 관리·보고(대학)

- 대학은 사업 추진 관련 모든 내용을 일자리포털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
- (실적관리) 대학은 학생 인적사항, 기업 정보, 학생 선발·수료·중도탈락 현황 등 사업 추진 실적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함
- (실적보고) 대학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진실적 보고서(서식 ⑬)를 작성하여 사업 실시상황을 송부해야 함

1-3.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과정 사업운영 추진실적보고서(대학)

- (사업운영 보고서 초안 제출) 대학은 뉴리더과정 사업운영 평가

를 위해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의 실적을 담은 사업운영 추진실적보고서 초안(서식⑬)을 작성하여 다음 해 1. 20까지 일자리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약정을 체결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제출

- (사업운영 보고서 최종 제출) 대학은 사업종료 후 다음 달 20일 이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종합결과보고서 제출(사업운영 추진실적 최종보고서(서식⑬), 관련 증빙서류 등) 및 정산보고서(서식⑬-1)
 - 최종보고서가 초안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운영 추진실적보고서 초안을 최종 보고서로 같음(사업운영 실적보고서 제출 불필요)

2 지도점검 및 지원기관 운영

2-1. 지도점검

- (운영기관) 관할 진흥원은 관내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장방문 지도·점검을 실시해야 하며(서식⑫),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점검 실시 가능
 - 그 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가능
 -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지도·점검에 불응하거나, 시행지침·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, 시정요구·주의·경고·약정해지 및 다음연도 운영기관 선정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(붙임㉔ 조치기준 참조)
- (체험기관) 운영기관(대학)은 기업에 대해 격월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의무 실시와 그 외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점검 가능,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점검 실시 가능
 - 운영기관(대학)은 기업에 대해 지도·점검에 불응하거나, 시행지침·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, 시정요구·주의·경고·약정해지 및 다음연도 선정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(붙임㉔ 조치기준 참조)
 - 운영기관(대학)은 지도·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, 그 사유와 일시 등을

사전에 통지하고 기업에 출입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- 운영기관(대학)은 기업의 학습프로그램 적정 운영여부, 학생들에 대한 출결 등 근태관리 상황, 사실상의 근로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 뉴리더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함

-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, 지침 등 위반사항 발생 시 7일 이내 시정해야 함

※ 기업의 시정요구 불응 등에 대해서는 불임Ⓢ에 따라 조치

● (인턴체험기관)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기업에 대해 인턴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의무실시와 그 외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점검 가능,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점검 실시 가능

2-2. 지원기관 선정·운영

● (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과정 지원기관) 진흥원은 대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및 일 경험 관련 전문성·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뉴리더과정 지원기관(이하 “지원기관”)으로 선정·운영할 수 있음

- 지원기관은 뉴리더과정 우수사례 발굴·전파,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,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·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

- 운영기관 및 기업은 지원기관의 교육·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
3 사후관리

3-1.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과정에 따른 후속조치

- 운영기관은 사전직무교육 이수와 관련한 학생의 발급 요구가 있을 경우 사전직무교육 이수 확인서를 학생에게 교부
- 기업은 뉴리더과정 기간 중 협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중도해지 통보서(서식⑳)를 운영기관에 발급
- 운영기관은 뉴리더과정 기간의 종료되었을 때는 이수한 학생의 발급 요구가 있을 경우 체험 기간 등을 기입한 뉴리더과정 확인서(서식㉑)를 학생에게 교부

3-2.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과정 만족도 조사

- 대학생 및 청년 인턴은 뉴리더 사업 종료 시 만족도 조사에 응하도록 지도
 - 대학생 직무체험 : 만족도 조사(서식㉒), 기업 만족도 조사(서식㉓)
 - 청년 인턴 : 만족도 조사(서식㉔)
 - 일자리포털 시스템을 통한 만족도 조사 가능

4 사업평가

4-1. 성과관리 및 평가

- (학생 평가) 기업은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 과정 종료 후 학생에 대한 수행평가표(서식㉕)와 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(서식㉕-1)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(일자리포털 시스템을 통한 만족도 조사 가능)
- (기업 평가)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과정 종료 후, 학생

은 기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(서식㉔)를 실시한 후, 이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

- (운영기관 평가 및 성과관리)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및 관리

4-2. 평가결과 활용

- 평가결과는 ‘우수’, ‘보통’, ‘미흡’으로 구분하고(절대평가)
- ‘미흡’ 기관 중 취득점수(100점 만점)가 60점 미만인 기관은 다음년도 운영기관 선정 시 배제 검토

VI 행정사항

- 2019년 사업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대전시의 해석에 따른다.